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방장비 무상 양여 근거 마련 등〉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495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용어 정비	3
가. ‘소방기관’ 용어 정비	4
나. ‘소방장비운용자’ 용어 정비	7
2. 소방장비 구매 기본원칙 규정	10
3. 소방차량 긴급정비지원단 운영 근거 신설	14
4.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의 매각, 관리전환, 무상양여 근거 마련	18
5. 소방장비 무상양여 근거 신설	2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건영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5. 11. 24.
3. 회 부 일 : 2025. 11.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 등의 경우 불용 결정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불용 장비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활용 가능한 소방장비를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은 인도적·외교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용 결정 받은 소방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장비의 활용성 및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는 소방차량 긴급정비체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대형 산불과 같이 소방차량에 대한 긴급정비가 필요한 재난현장에서 소방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이 ‘소방차량 긴급정비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현장에서 소방차량의 정비를 신속히 시행하여 소방력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 외 소방장비 구매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명문화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 전반의 실효성과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

2조제3호 등).

Ⅲ. 검토의견

1. 용어 정비

개정안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소방기관”을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변경하고, “소방장비운용자”에 의무소방원을 삭제하고 일반직공무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제7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소방기관”이란 <u>중앙소방학교 · 중앙119구조본부 · 소방본부 · 소방서 · 지방소방학교 · 119안전센터 · 119구조대 · 119구급대 · 119구조구급센터 · 항공구조구급대 · 소방정대 · 119지역대 및 소방체험관</u>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u>기관</u> 을 말한다.	3. ----- <u>이란</u> ----- ----- ----- ----- ----- ----- ----- <u>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기관</u> -----.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7. “소방장비운용자”란 소방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소방공무원, <u>의무소방원</u> 및 <u>의용소방대원</u> 을 말한다.	7. ----- ----- <u>일반</u> <u>직공무원</u> ,-----.

가. ‘소방기관’ 용어 정비

정의규정은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현행법은 소방기관을 “중앙소방학교 · 중앙119구조본부 · 소방본부 · 소방서 · 지방소방학교 · 119안전센터 · 119구조대 · 119구급대 · 119구조구급센터 · 항공구조구급대 · 소방정대 · 119지역대 및 소방체험관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규정하여 소방기관의 범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음.

이에 비해 개정안은 소방기관을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여, 소방기관의 범위를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관의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정의규정을 변경하고 있음.

<소방기관의 정의 방식>

구분	현행	개정안
소방기관의 개념	-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좌 동)
	- 구체적인 기관명 열거(예시) : 중앙소방학교 · 중앙119구조본부 · 소방본부 · 소방서 · 지방소방학교 · 119안전센터 · 119구조대 · 119구급대 · 119구조구급센터 · 항공구조구급대 · 소방정대 · 119지역대 및 소방체험관 등	- 구체적인 기관명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한편, 소방에 관한 기본법인 「소방기본법」은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소방업무’로 규정하고, 이러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소방기관으로 보면서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제3조제1항)¹⁾,

대통령령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는 소방청의 소속기관으로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은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출장소·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소방정대(消防艇隊), 119지역대, 119특수대응단, 테러대응구조대·119항공대 및 특수구조대, 소방체험관 등 구체적인 지방소방기관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음²⁾.

1)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 12.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④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2)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조(소속기관) ① 소방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둔다.

② 소방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소방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소방연구원을 둔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행정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이 상위법인 「소방기본법」이 소방기관의 개념을 기능 중심으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관의 설치와 종류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입법 체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소방기관을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의하면서 구체적인 기관명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방식은 현행 소방법 체계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소방장비관리법」(이하 “이 법”이라 함)이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³⁾ 개정안에서 소방기관의 주요 사무를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서 소방기관의 명칭을 모두 열거하지 않아도 이 법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소방기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보임.

다만, 법률에서 용어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수범자가 그 위임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한정적 수식어를 사용하거나 예시를 통해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⁴⁾, 소방기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의하는 경우에도 “중앙 119구조본부, 소방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같이 주요 기관을 예시적으로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소방장비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 246면

나. ‘소방장비운용자’ 용어 정비

현행법은 소방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소방장비운용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을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의무소방원 제도⁵⁾는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자원의 감소로 2021년 7월 이후 모집을 중단하였고, 2023년 6월에 의무소방원이 모두 전역함에 따라 함에 사실상 폐지된 제도임.

한편, 현재 소방장비를 운용하는 공무원 중에는 소방공무원 외에 항공관제, 헬기운항·정비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도 다수 존재함.

개정안은 소방장비운용자의 정의에서 ①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의무소방원을 삭제하고 ② 현재 소방헬기 운항·정비, 항공관제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직공무원을 추가하는 등 현재 소방장비를 직접 운용하고 있는 소방장비운용자 현황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5) 의무소방원 제도 개요는 [참고] 참조

<공무원 중 소방장비운용자 현황>

(기준일: 소방청 2025. 11. 1. / 시도 2025. 7. 1., 단위: 명)

구 분	소방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비 고 (일반직공무원의 직렬 및 업무)
소방청 (본청)	241	45	- 전문경력관 : 비상계획, 항공관제 등 - 전문임기제 : 디지털소통, 그래픽, 영상편집 등 - 일반행정 : 소방행정 등
소방청 (119중앙구조본부)	391	100	- 전문경력관: 헬기운항·정비, 항해·기관, 구조견 훈련사 등
중앙소방학교	77	8	- 일반행정: 간호, 시설, 청사 등
국립소방연구원	18	24	- 일반행정: 실험, 연구 등
시·도 소방본부	66,074	143	- 일반행정, 정보통신 등
계	66,801	320	

(자료: 소방청)

다만, 소방환경이 변화되는 경우 소방장비 운용 주체 역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방장비운용자의 정의를 “소방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⁶⁾”으로 규정하는 경우 소방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변화하는 소방환경(조직명, 운용대상)에

6) 소방청은 다음과 같은 대통령령(안)을 제시함.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안)」

제○조(소방장비운용자의 범위) 법 제○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3. 소방기관에 소속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소방장비의 운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소방장비의 특성, 운용 환경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소방장비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유연한 대응을 위해 소방기관명 하위법령 위임과 운용자 대상 명칭 변경에 관한 내용을 적극 수용한다는 의견을 밝힘.

2. 소방장비 구매 기본원칙 규정

개정안은 소방장비 구매 기본원칙을 이 법에 새로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2).

현행	개정안
<신설>	제18조의2(소방장비 구매 기본원칙) <u>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소방장비를 구매할 수 있다.</u> <u>1. 소방장비 구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u> <u>2. 최신 기술을 활용한 우수 장비를 도입할 것</u> <u>3. 장비 간의 호환성 확보를 통한 소방장비의 운용성을 증진할 것</u> <u>4. 소방장비운용자가 운용하기에 편리할 것</u> <u>5. 소방장비운용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u>

개정안은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으로
1) 소방장비 구매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2) 장비의 최신 기술 장착,
3) 장비 간 호환성, 4) 장비 운용의 편리성, 5) 소방장비운용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소방장비 구매 기본 원칙>

구 분	구매원칙
장비 구매 절차	1. (투명성·효율성) 소방장비 구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 5. (현장대원 의견 수렴) 소방장비운용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장비 구매시 우선 고려 사항	2. (성능 우선) 최신 기술을 활용한 우수 장비를 도입할 것 3. (호환성)장비 간의 호환성 확보를 통한 소방장비의 운용성을 증진할 것 4. (운용 편리성)소방장비운용자가 운용하기에 편리할 것

개정안의 취지는 소방장비 구매 절차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장비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대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소방장비 선정 시 성능·호환성·운용 편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재난현장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방장비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현재 소방장비는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구매하고 있는 바,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소방장비 구매 절차 및 선정 기준의 통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유사 입법례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양경찰장비 도입의 기본원칙으로 장비도입사업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음(제9조)⁷⁾. 개정안은 이러한 기본원칙에 더하여

7)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해양경찰장비 도입의 기본원칙)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장비를 도입할 수 있다.

1. 해양경찰장비 도입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

‘소방장비 운용의 편리성’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 소방대원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장비의 운용 용이성과 편리성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위험한 재난환경에서 안정성과 성능위주의 장비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개정안의 내용을 적극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소방청은 현행 소방장비 구매는 최저가 입찰 방식이 중심이 되어 고위험 재난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정성과 성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구조·구급 등 전문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이 낮다는 이유로 고성능 장비 도입이 제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자격과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받은 후 다시 구조전문업체로부터 장비를 재구매하는 과정에서 품질 저하, 납기 지연 등 계약 이행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하면서,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가격 위주의 장비 구매에서 벗어나 예산 범위 내에서 최고의 사양과 안정성이 확보된 장비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장비 구매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에 따라 소방장비

-
2. 최신 기술을 활용한 우수 장비를 도입할 것
 3. 장비 간의 호환성 확보를 통한 해양경찰장비의 운용성을 증진할 것
 4. 해양경찰장비관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구매 과정에서 업체 간 분쟁이나 민원이 줄어들 수 있어 구매 담당자가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으며, 현장 최적합 장비 도입을 통해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와 장비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어 궁극적으로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소방장비 구매 기본 원칙 제정에 따른 소방장비 구매 개선(안)>

소방장비 구매 현황	개정안 입법 시 소방장비 구매 개선(안)
현재 소방장비 구매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조달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일반·제한경쟁입찰, 제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MAS) 등 다양한 조달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집행하고 있음. 현행 제도상 반드시 최저가로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별도의 구매원칙이나 성능 우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최저가 낙찰 구조로 계약되는 한계가 있음.	1. 소방장비 구매 시 현장대원 의견 반영, 현장 최적합 장비 구매 검토 가능 2. 저가장비 위주의 구매를 억제하고 대원 운용 시 안정성과 성능을 우선 반영한 장비 구매 가능

(자료: 소방청)

3. 소방차량 긴급정비지원단 운영 근거 신설

개정안은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구조기관⁸⁾의 인력과 장비 등이 동원되었을 때, 재난 현장에 소방차량 긴급정비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소방장비의 정비) ①·② (생략) <u><신설></u> <u><신설></u>	제35조(소방장비의 정비)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이 동원되었을 경우, 소방청장은 재난 현장에 소방차량 긴급정비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u> <u>④ 제4항에 따른 소방차량 긴급정비지원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 제5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의 규모와 유형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소방장비가 고장나거나 불량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장비정비센터,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등에서 소방장비를 정비하도록 하여 평소시의 소방장비 정비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장비가 고장나는 경우 이를 현장에서 즉시 정비할 수 있도록 소방차량 긴급정비지원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으로,

재난현장에 소방장비를 정비하기 위한 지원단이 상주하는 경우 소방차량 등 주요 소방장비 고장 시 즉시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어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 진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현행과 개정안의 내용 비교(제35조)>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소방장비 고장·불량사항 발생	(평시) -정비: 소방장비정비센터,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그 밖의 전문 정비업체에서 수리 -확인: 정비 후, 소방기관의 장이 적정 정비 여부 확인	
	<u><신 설></u>	(재난 발생시) -재난 현장에서 소방장비 긴급 수리.

참고로 소방청은 2025년에 발생한 주요 재난 현장에 긴급정비 지원단을 운영하였는데, 긴급정비지원단 현장 운영을 통해 재난 대응 과정

에서 장비 가동 중단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재난 진압에 기여하였다고 설명함.

<2025년도 긴급정비지원단 운영 현황>

구 분	목 적	기 간	장 소	업무내용	비고
산불	24시간 가동 중인 출동차량 정비	3.27. ~ 29. (3일간)	경북 의성 종합운동장	차량점검 및 정비, 소모품 교체 등	176대 조치
가뭄		9.8. ~ 16. (8일간)	강원 강릉 공설운동장		162대 조치
건물 붕괴		11.10. ~ 14. (5일간)	울산 남구 울산화력발전소		79대 조치

(자료: 소방청)

다만, 개정안 제35조제3항은 재난현장에 ‘소방차량 긴급정비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난현장에는 소방차량 외에 화재진압장비, 구조·구급·개인보호장비 등 다양한 소방장비가 동원되고 이러한 소방장비 역시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정비할 수 있다는 점과 재난 현장에서는 정비 후 소방기관의 장이 적정 정비 여부를 확인할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소방청의 설명을 감안하여,

안 제35조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소방차량 등 소방장비를 정비하기 위한 지원단을 재난현장에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범문을 조정하는 것이 소방 활동 관련 현황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 밖에, 개정안은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근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의 동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호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⁹⁾ 인용 조문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재난현장 활동의 연속성과 효율성, 전국으로 다시 복귀해야 되는 대원들의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①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개정 2017.7.26.>

③ 중앙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통제단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4조(중앙통제단의 기능) 중앙통제단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2.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의 동원을 포함한다)
3.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4.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5. 그 밖에 중앙통제단의 장(이하 "중앙통제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의 매각, 관리전환, 무상양여 근거 마련

개정안은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에 대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이를 매각하거나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 또는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및 제3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①·② (생략) <u><신설></u>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에 대하여 「물품관리법」 제3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에 따라 매각하거나, 「물품관리법」 제3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7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 또는 양여할 수 있다¹⁰⁾¹¹⁾.</u>

10) 「물품관리법」

제36조(매각) ①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물품 중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으로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37조(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조달청장에게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 관리전환·매각 등을 통하여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무상(無償)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불용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사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제38조(불용품의 양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내용연수가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는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소방기관의 장이 해당 소방장비를 불용 처분하도록 하고(제38조),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가 사용될 경우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소방장비를 폐기하도록 하고 있음(제39조).

한편, 불용 결정 이후 이를 매각하거나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 전환 또는 양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관리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이를 처분 하고 있음.

제39조(매각의 특례)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나 불용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1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6조(물품의 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개정 2021. 4. 20.>

② 물품을 매각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물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의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제77조(불용품 처분의 요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 중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 양여 또는 매각 등에 의하여 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불용품이 있으면 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은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21. 4. 20.>

제78조(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용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게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을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2. 민방위용, 재난재해 대비비용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을 그 목적에 맞게 양여하는 경우
 3.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되지 아니하거나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4.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5. 제75조제2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76조제3항에 따른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인 경우
 7.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인 경우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양여하는 경우
- ② 그 밖에 불용품 양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소방기관의 장’이 불용결정된 소방장비에 대하여 매각하거나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 또는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하려는 내용임.

<소방장비의 처분 관련 현행과 개정안의 내용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소방청 소방장비	지방자치단체 소방장비	소방청 소방장비	지방자치단체 소방장비
[폐기]	-소방기관의 장(「소방장비관리법」 제39조제1항)			
[그 밖의 처분]				
근거 법률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법」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 제39조제3항	
매각	- <u>소방청장</u> 이 조달 청장에게 매각 요 청(제37조제1항) *특례: 소방청장 또는 조달청장이 경매 등으로 매 각 가능(제39조)	- <u>지자체장</u> (공유 재 산법 제76조제1 항) - <u>지자체장</u> 이 조달 청장에게 처분 요 청(제77조)	- <u>소방기관의 장</u> 이 조달청 장에게 매각 요청	- <u>소방기관의 장</u>
무상 관리 전환	- <u>소방청장</u> 이 조달 청장에게 요청(제 37조제2항)	- <u>지자체장</u> 이 조달 청장에게 처분 요 청(제77조)	- <u>소방기관의 장</u> 이 조달청 장에게 요청	
국내 양여	- <u>소방청장</u> 이 지자 체 등에 무상 양 여 가능(제38조제 1항)	- <u>지자체장</u> 이 조달 청장에게 무상 양 여 가능(제77조) -지자체장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게 양여 가 능(제78조)	- <u>소방기관의 장</u> 이 조달청장에게 무상 양여 가능	

개정안의 취지는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의 매각, 무상 관리전환 또는 양여 절차를 소방기관의 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장비 처분 절차의 신속성과 현장 중심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소방장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를 재원으로 조달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그 관리·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권한은 1) 국가 물품은 「물품관리법」에서 중앙기관의 장인 소방청장에게, 2) 지방자치단체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음¹²⁾.

구체적으로, 소방청이 관리하는 소방장비는 「물품관리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방청장이 매각 요청, 무상 관리전환 요청, 무상 양여 또는 매각을 수행하고 있고, 각 시·도 소방본부가 관리하는 소방장비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각, 조달청장에 대한 처분 요청, 무상 양여 또는 양여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현행 법령에 따르면 소방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거나 내부 위임 규정을 두어,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에게 소방장비의 관리·처분에 관한

12) 1) 소방청에서 관리하는 소방장비의 경우 「물품관리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매각 요청(제37조제1항), 무상 관리전환 요청(제37조제2항), 무상 양여(제38조), 매각(제39조)을 하고, 2)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관리하는 소방장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각(제76조), 조달청장에게 처분 요청 및 무상 양여(제77조), 양여(제78조)함.

실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 등 현행법 체계에서도 소방기관의 장이 실질적으로 매각 등 처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¹³⁾¹⁴⁾.

이와 같이 현행법 체계에서도 소방기관의 장이 실질적으로 매각 등 처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과 같이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에 대하여 매각하거나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 또는 양여할 수 있는 권한을 ‘소방기관의 장’에게 직접 부여할 필요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행 위임·대행 체계를 활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행정 효율성이나 신속성 측면에서 어떠한 추가적인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는 불용 소방장비의 매각, 양여, 무상관리전환 등은 현행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절차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이 실질적으로 매각 등 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13) 「물품관리법」

제9조(물품관리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필요하면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物品管理官)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제36조(매각) ①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물품 중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으로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1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2조(물품관리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조달청은 현행 「물품관리법」에 따라서도 소방청 소관 물품의 관리 전환이나 양여가 가능하므로 이 법에 별도로 관련 조문을 신설한 실익이 적다는 의견을 밝힘.

소방청은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국가물품 관리를 총괄하는 「물품관리법」과 소방장비를 관리하는 「소방장비관리법」상 관리 주체가 달라짐에 따라 절차의 혼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의 소방장비 관리 운영실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함.

5. 소방장비 무상양여 근거 신설

개정안은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현행	개정안
<신 설>	제39조의2(소방장비의 무상양여) ①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39조, 「물품관리법」 제3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그 성능의 유지에 필요한 정비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양여의 대상국가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필리핀과 페루, 캄보디아 등 31개국에 1,129대의 각종 소방차량을 지원하여 왔음. 소방청은 이러한 해외 무상양여를 통해 한국산 소방장비에 익숙해진 현지 소방 당국이 우리나라의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선순환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함.

<소방장비 해외 무상양여 실적(2004 ~ 2024) >

총계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기타
1,129	301	85	689	54

※ 기타차량: 화학차, 고가차, 구조차, 지휘차, 급식차 등
(자료: 소방청)

개정안은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39조의2제1항), 해외 무상양여 결정을 한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정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2항).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불용처분되었으나 사용이 가능한 소방차량 등 소방장비를 개발도상국에 무상양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 우리나라 소방장비의 우수성을 개발도상국에 홍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방 장비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소방장비를 해외에 무상양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나라 장비의 우수성을 외국에 홍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방장비 수출을 기대하는 수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힘.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은 국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해외 무상양여는 「물품관리법」과 관련 법령에 해당 내용이 없으므로 이 법에 해외 무상양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나, 제39조에 따라 폐기하여야 하는 소방장비 중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협력이라는 목적 하에서도 양여 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만,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관련 법령 [「공유재산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0호,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73호)¹⁵⁾]에

1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용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게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5. 제75조제2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79조(불용품의 양여) ① 법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4. 20., 2023. 4. 11., 2023. 8. 22.>

1. 국가
2. 다른 지방자치단체
3. 지방자치단체조합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교육 또는 연구를 설립 목적으로 하는 기관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8.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9.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불용품의 양여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정부와 지방 정부에게 양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 개별 법에서 동일한 내용을 신설할 실익이 적고, 공유물품의 처분에 대한 전국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한편, 개정안을 입법하는 경우 법제적 측면에서는 개정안 제39조의2의 내용이 국내가 아닌 해외 무상양여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¹⁶⁾ 조제목을 “소방장비의 해외 무상양여”로 변경하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¹⁷⁾에서는 국제교류협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 법에서도 “국제협력”을 “국제교류협력”으로 변경하여 법률 간의 용어를 통일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73호)
제2조(불용품 양여 대상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불용품의 양여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정부와 지방정부를 말한다. 다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6 제1호나목의 나외2지역은 제외한다.

16) 개정안 제39조의2제1항 본문 중 “「물품관리법」 제3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는 국내 무상양여에 관한 규정임.

1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2. “개발도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문 의 처

02)6788-5351

참고

의무소방원 제도 개요

(자료: 소방청)

(설치연혁) 2002년 서울 홍제동 화재로 6명의 소방공무원이 순직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사고를 계기로 소방 현장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8월 설치근거 법률인 ‘의무소방대 설치법’ 제정

(복무연혁) 2002년 3월 1기 209명을 시작으로 2023.6월까지 총 73기, 약10,607명이 의무소방원으로 근무. ※ 복무기간 20~ 23개월 근무

(근무부서) 시·도소방본부(소방서, 119안전센터, 구조대 및 구급대)

(주요업무)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활동 보조, 재난현장 촬영 및 생활안전 보조, 예방순찰, 소방용수시설 점검 등 소방업무 보조

(폐지사유) 병역 자원 감소 및 국방개혁 2.0에 따라 2018년부터 순차적 배치인원을 축소하여 2023.6월 73기 만기 전역을 마지막으로 폐지